

시간제 등록생 운영규정

제정 2013.12.1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원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에 시간제 등록을 할 수 있다.

1.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2.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.

제3조 (모집인원) 모집인원은 각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의 10%범위 안에서 매 학년도 학기별로 총장이 정한다.

제4조 (모집방법 및 시기) 시간제 등록생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, 모집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학기 모집 : 1월 ~ 2월
2. 2학기 모집 : 7월 ~ 8월

제5조 (전형방법) ①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.

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 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②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하여 수강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할 수 있다.

제6조 (학점이수범위) 시간제등록생은 매 정규학기(계절학기 제외)당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
제7조 (재학기간 및 학년) ①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단위로 재학기간이 종료된다. 다만, 본인이 원할 때에는 매 학기에 실시하는 시간제등록생 모집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경우 계속하여 재학 할 수 있다.

② 시간제등록생은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하며, 등록학년도 및 학기와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정의 교과목이수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
제8조 (수강신청) ① 학기별 수강신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당해 전공 계열 또는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.
② 시간제등록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현장실습 등 정규학생의 수업권을 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9조 (등록) ① 합격자는 총장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.
② 등록금액은 본교 학점은행제 금액과 동일하게 산출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한다.
③ 시간제등록생은 입학금 및 학생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④ 시간제등록생이 등록완료 후 합격포기, 자퇴, 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한 해당등록금을 반환한다.

제10조 (교과과정 및 수업) ① 교과과정 및 수업은 정규학생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한다.
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의 수업시간표에 따라 본인이 수강신청 한 해당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성적평가 및 관리) ① 시험 및 성적은 정규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며, D급 이상의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
② 당해학기 학업성적표 표기 및 관리는 정규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, 관리한다.

제12조 (학적관리) ① 시간제등록생의 학적사항은 정규학생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.
② 성적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며, 시간제등록생이 2개 학기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된 성적표를 계속 사용하여 이중학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.

제13조 (학점은행제 연계운영) ①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을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등록생 또는 기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(본교 부설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시간제등록제도와 학점은행제도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본교에서 시간제등록생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, 학점인정신청, 수수료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4조 (학위수여요건) 시간제등록생이 본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동 규정 제18조에 따른다.

1.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2. 본 대학에서 단일전공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50학점이상 취득한 자
3. 학점은행제운영규정에 의한 학습자 등록 전공이 본 대학 전공과 일치 하는 자

제15조 (학위신청 및 수여) ①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, 학점인정을 받은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학위신청서에 학점인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기간내에 학사운영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기 신청기간 : 매년 12월 20일부터 다음해 1월 10일까지
2. 후기 신청기간 : 매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

② 학위신청자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고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위수여에 대한 결과통보에 학위증을 수여한다.

제16조 (제증명 발급) ① 시간제등록생이 재학 또는 재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을 발급한다.

1. 재학증명서
2.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
3.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

② 본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후 국가평생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내역 및 성적자료를 이관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을 발급한다.

1. 학위증명서(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)
2. 성적증명서

제17조 (학칙준수 및 적용) ① 시간제등록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.

제18조 (관계법령의 준용) 시간제등록생 관리 및 학점은행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제19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